

2025년도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신종갑 의원 회피 신청 허가의 건

의안 번호	25-66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 : 2025. 6.

제안자 : 행정건설위원장

1. 제안 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에 따라 2025년도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회피 사유에 해당되어 2025년도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피 신청을 허가를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마포구체육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회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및 현행 규정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(제척과 회피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징계)

나. 회피 허가 신청서 : 붙임 참조

회피 신청서

1. 회의 및 안건명 :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행정사무감사,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<마포구체육회>

2. 회피 신청 근거 :

- 「지방자치법」 제84조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9조(제척과 회피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19조(징계)

3. 회피 신청 사유 :

감사 관련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인에 해당됨

위 사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회피를 신청하오니 허가
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 년 6 월 9 일

신청인 신종갑(서명  날인)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장 귀하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4. 5. 17.] [법률 제19951호, 2024. 1. 9., 타법개정]

제82조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(直系尊卑屬)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법 시행령

[시행 2025. 1. 1.] [대통령령 제35149호, 2024. 12. 31., 일부개정]

- 제49조(제척과 회피)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② 본회의나 감사·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·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·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2.02.10]

(일부개정) 2022.02.10 조례 제1469호

제19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영 제50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」(이하 “회의 규칙”이라 한다)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